



인터넷(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24시간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홈페이지 www.lh.or.kr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산 (山) 좋고 물 맑은(淸)!

出立步 化村

산청옥산 국민 • 영구임대

총 120세대

<mark>근민임대</mark> 100세대 [전용 29㎡,46㎡] 명구임대 20세대 [전용 24m²]









VOICEYE





산청의 관문! 산청IC와 읍내가 가까운 산청옥산입니다.

인근의 산청IC와 3번·59번 국도를 통해 인근도시로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산청읍내의 생활인프라와 금서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산청농공단지 등 직장이 가까워 편리한 산청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산청군청

산(山) 좋고, 물 맑은(淸)! 산청에서 시작되는 국민행복!



편리한 교통

3번과 59번 국도를 통해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 하고,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



가까운 산청 생활과 직주근접

군청, 시장, 법원, 버스터미널, 마트, 학교가 가깝고 인근에 금서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산청농공단지등 가까운 직장



쾌적한 자연 환경

지리산천왕봉, 대원사계곡, 황매산철쭉, 경호강 비경 등 집만 나서면 곳곳에 아름다운 절경





단지조감도, 조경배치도

가벼운 임대료와 다양한 편의시설!

탁 트인 단지내 주차공간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산청옥산 국민·영구임대주택입니다.





산청옥산 1블록 총 150세대 (국민 100세대, 영구 20세대, 행복 30세대)

국민임대 [금회공급]			영구임대 [금회공급]	행복주택 [별도 공급]		
29A	29B 주거약자용	46	24	16A (빌트인)	16B	36
52세대	8세대	40세대	20세대	7세대	3세대	20세대

생활에 만족을 드리는 산청옥산 국민·영구임대의 다양한 편의시설



맘편한 보육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인 어린이놀이터 등 마음 편한 보육환경



함께하는 복지시설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생활과 공동체 활성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주민운동시설과 쉼터 등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주민운동시설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쉼터 조성

국민임대

52세대

		주	택	면 적
전	용	면	적	29.8600m²
주	거	공	용	14.5400m²
기	타	공	용	4.7800m²
계	약	면	적	49.18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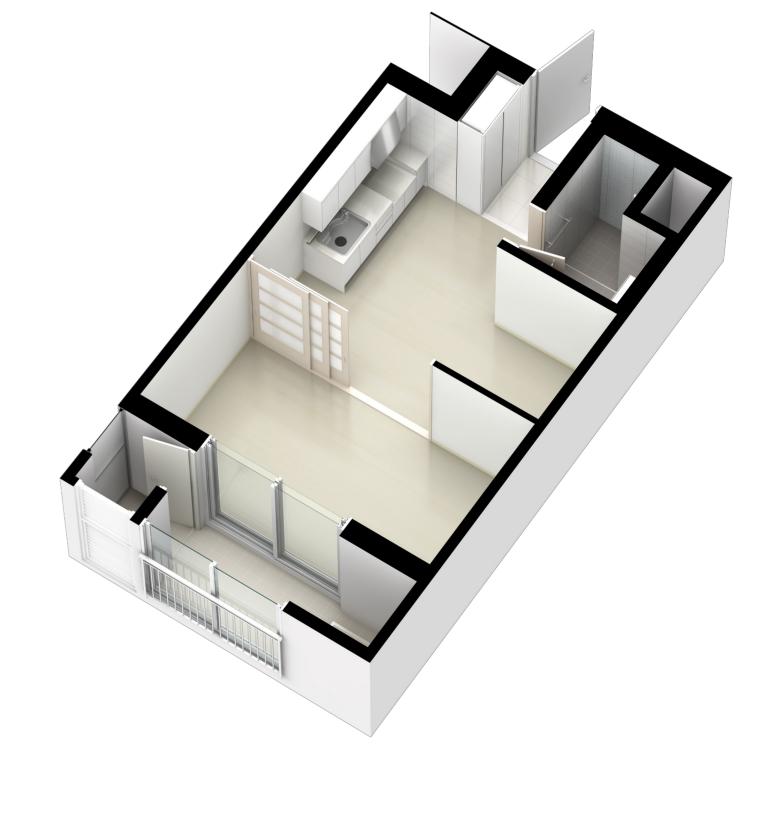
	실 별	면 2	덕
거 실	/ 침 실		11.77m²
주 방	/ 식 당		13.15m²
욕	실		3.20m²
현	관		1.74m²
합	계		29.8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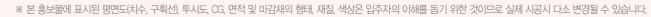
	i.	발코니	니면적	
발	코	니		7.20m²

| 1110 | 720 | | 1090 | 주방/식당 거실/침실 실외기실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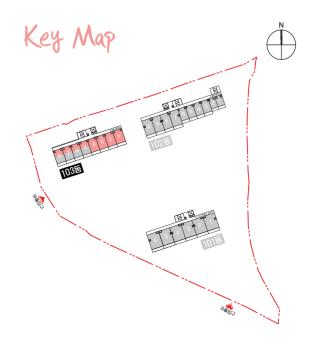
4800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² X 0,3025=평)

국민임대

29B

8세대 (주거약자용)

		주	택	면 적
전	용	면	적	29.8600m²
주	거	공	용	14.5400m²
기	타	공	용	4.7800m²
계	약	면	적	49.18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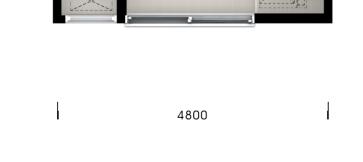
	실 별	면 적	
거 실	/ 침 실	11.77	m²
주 방	/ 식 당	13.15	m²
욕	실	3.20	m²
현	관	1.74	m²
합	계	29.86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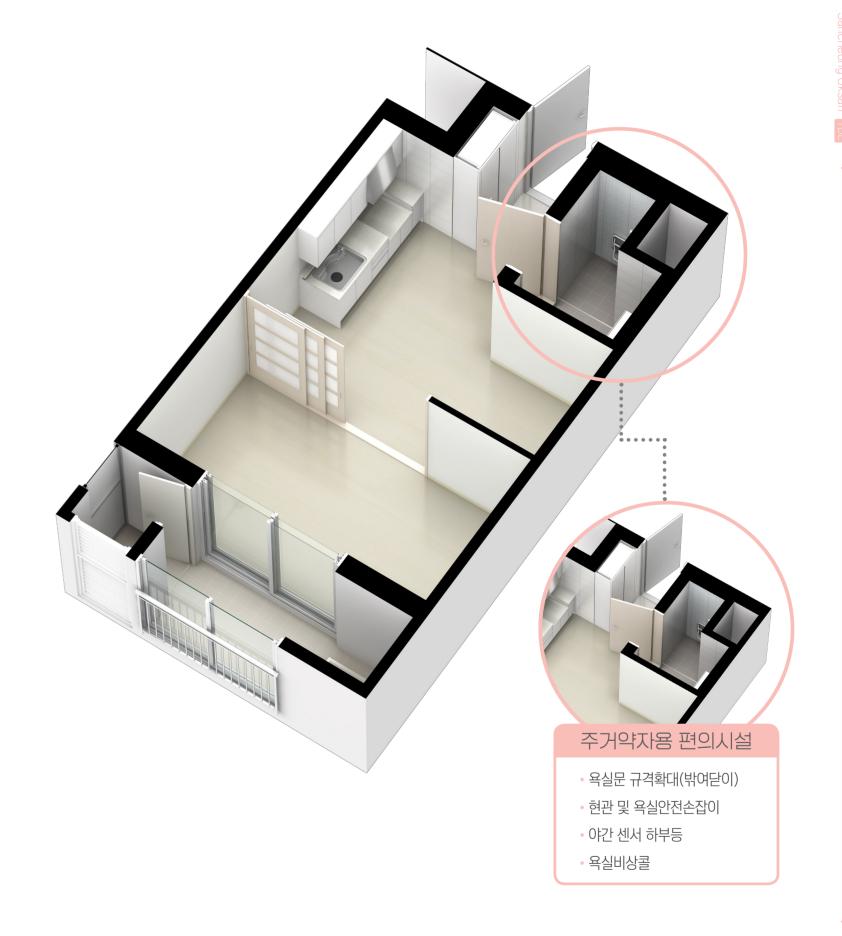
발코니면적 발 코 니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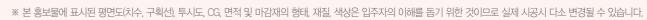
Key Map

| 1090 | 1880 | 1110 | 720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²×0.3025=평)

4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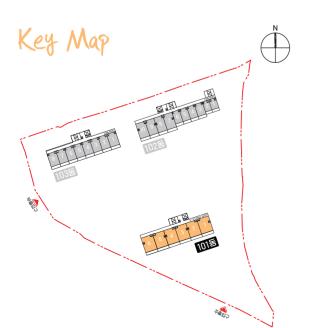
		주	택	면 적
전	용	면	적	46.0100m²
주	거	공	용	21.4500m²
기	타	공	용	7.3600m²
계	약	면	적	74.82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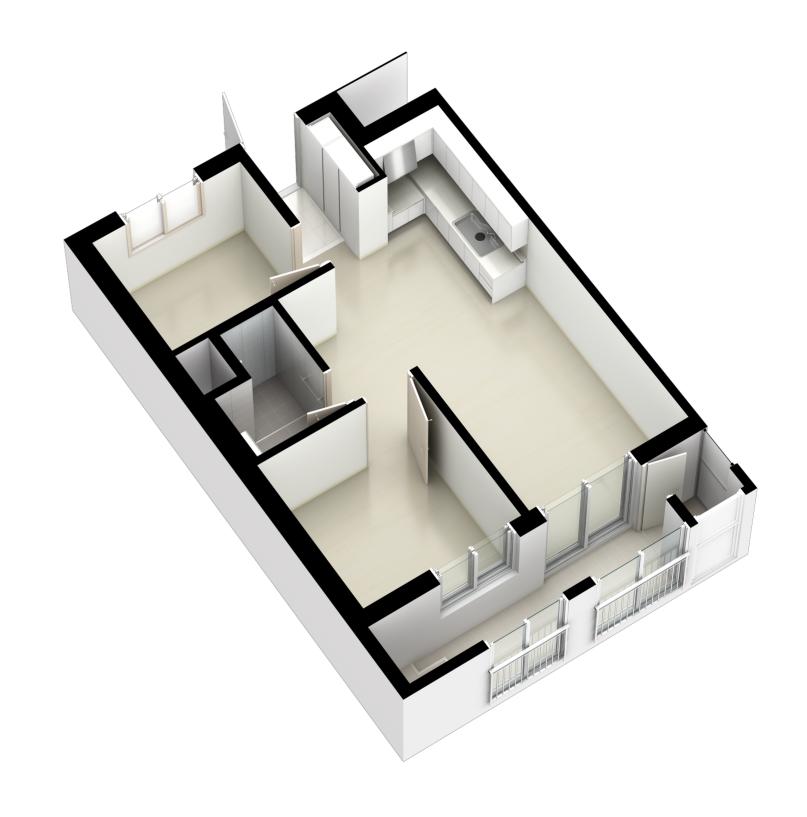
	실	별	면	적
거		실		9.52m²
침	실	1		9.21m²
침	실	2		7.11m²
주 방	/ 식	당		14.93m²
욕		실		3.47m²
현		관		1.77m²
합		계		46.01m²

	Ė	발코니	l 면 적	
발	코	니		9.45r



6300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² X 0,3025=평)

영구임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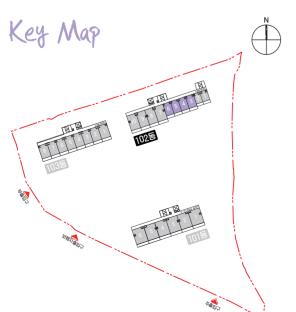
2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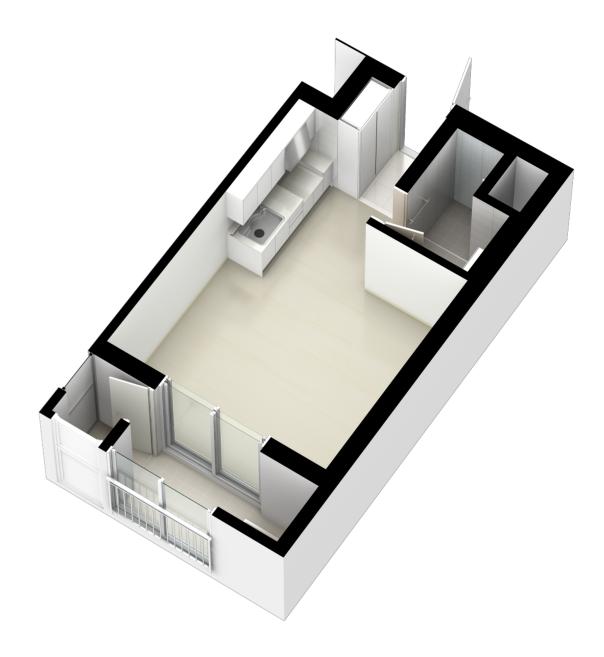
		주	택	면 적
전	용	면	적	24.7500m²
주	거	공	용	12.3300m²
기	타	공	용	3.9600m²
계	약	면	적	41.0400m²

	실 별	면	적
거 실	/ 침 실		16.77m²
주 방	/ 식 당		3.15m²
욕	실		3.19m²
현	관		1.64m²
합	계		24.75m²

		발코니	면 적	
발	코	니		6.45m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m² X 0,3025=평)





산청옥산 1블록 총 150세대 (국민 100세대, 영구 20세대, **행복 30세대)**

국민임대 [금회공급]			영구임대 [금회공급]		행복주택 [별도 공급]		
29A		29B 주거약자용	46	24	16A (빌트인)	16B	36
52세대	iH	8세대	40세대	20세대	7세대	3세대	20세대



	805	804	803	802	801
					701
					601
					501
					401
					301
		필로티	필로티		201
경로당	경로당	필로티	필로티		101

101동 (40세대)

610	609	608	607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10	209	필로티	필로티	206	205	204	203	202	201
110	109	필로티	필로티	106	105	104	103	102	101

36	24	16B (3세대)
(20세대)	(20세대)	16A 빌트인 (7세대)
	102동 (50세대)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08	207	206	205	필로티	필로티	202	201
108	107	106	105	필로티	필로티	102	101

29B 주거약자용 (8세대) 103동 (60세대)



VOICEYE

산청옥산 국민·영구임대 마금째 내역시설 항목 마감사항 비고 현관도어록 레버형 현관 신발장 문짝HPL, 체대LPL 바닥 자기질타일 비디오폰 칼라 비디오폰 거실/침실 바닥재 륨카페트 벽지 벽:실크도배지 천장: 발포도배지 바닥재 륨카펫트 벽지 벽: 실크도배지 천장: 발포도배지 침실 창호 합성수지창호 문짝 ABS도어 에어컨 벽걸이형 싱크대 상판(BMC) / 문짝(HPM) 개수대 언더싱크용 렌지후드 디럭스형 주방 싱크수전 측면개폐형 바닥재 륨카펫트 주방벽 도기질타일 세면기 도기질 양변기 투피스형 샤워수전 싱글레버 욕실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타일(벽) 도기질타일 타일(바닥) 자기질타일 발코니샷시 합성수지창호 발코니 세탁기수전 가로꼭지설치(십자핸들) 조명설비 발코니/욕실/현관/거실/침실/주방 LED 기타/정보통신 CCTV시스템 공용부분 설치 화장실 입구 동작감지센서 부착된 등 설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산청옥산 국민임대주택 일주자 모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4.09)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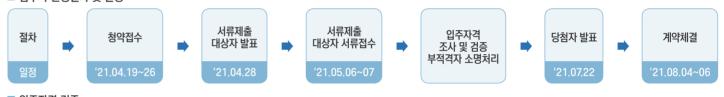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신청마감일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	너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IJIB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	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건설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100호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세대 당 계약면적(m) 공급호수					구조	_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주거	주거 주거 그 밖의 공용면적 원계 위선 일반		일반	주거	해당동	및	입주 예정				
02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공급	공급	약자		난방	
29A	52	29.86	14.3537	4.7796	_	48.9933	52	48	4	-	103동		
29B	8	29.00	14.3337	4.7790	_	40.9933	8	-	-	8	100-5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	'22.12월
46	40	46.01	22.1171	7.3647	-	75.4918	40	39	1	-	101동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00호), 영구임대주택(20호) 및 행복주택(30호)가 건설되는 혼합단지입니다.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기본임대	조건(원)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공급 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한도액	임대보증금	9101511=	
02	계	계약금	잔금	설립네포	(원)	임네보증급	월임대료	
29A/B	7,250,000	1 450 000	5,800,000	120,770	(+)12,000,000	19,250,000	60,770	
23A/D	7,230,000	1,450,000	5,600,000	120,770	(-)4,000,000	3,250,000	129,100	
46	10.002.000	2.016.000	15 066 000	200.020	(+)13,000,000	32,082,000	135,830	
40	19,082,000	3,816,000	15,266,000	200,830	(-)13,000,000	6,082,000	227,91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u>(분양권등 포함)</u>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MIII 1 012 (M 7 1 1 0 1 1 0)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m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하여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EHO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 $5 \cdot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cdot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주거약자는 <u>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u>外 <u>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u>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u>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u>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월 열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2,692,468)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인가구	80%	(3,650,028)원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소득		3인가구		(4,368,364)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4인가구	700/	(4,965,944)원이하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인가구	70%	(4,965,944)원이하	* 7인가구(5,444,616 원),				
		6인가구		(5,175,553)원이하	8인가구(5,713,679원)				
TLAF	총자산가액	· 게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mark>29,200만원</mark> 이하							
자산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mark>2,497만원</mark> 이하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니니	,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총 자 산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촉예금, 자유저촉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촉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 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회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신청접수		약자 인터넷청약자 출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21.04.19(월) 10:00~		등기 우편	'21.05.06(목)~ 05.07(금)	'21.07.22(목)	온라인	'21.08.04(수) 10:00~		
모바일	모바일 04.26(월) 17:00	'21.04.28(수)	등기우편 발송장소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17:00 이후	계약	08.06(금) 17:00		
현장	'21.04.19(월) 10:00~16:00 (점심 12:00~13:00)	17:00 이후	현장 제출	'21.05.06(목) 10:00~16:00 (점심 12:00~13:00)	※ 당첨지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현 장 계 약	'21.08.05(목) 10:00~16:00 (점심 12:00~13:00)		
현장접수 장소	산청군 공설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		현장제출장소	개별안내예정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현장계약 장소	개별안내예정		

-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드리며, 부득이 하게 비대면 접수가 불가하신 분들만 현장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인 70%, 2인 60%)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1인 70%초과 90%이하, 2인 60%초과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 2021.04.19(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 방문장소: 산청군 공설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
 - ※ 현장신청 시 제출서류(7. 신청서류 참고)를 현장에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underline{www.LH.or.kr}$) \rightarrow 청약센터($\underline{http://apply.LH.or.kr/}$) \rightarrow 공동인증서로그인 \rightarrow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2021.04.19(월) 10:00부터 2020.04.26(월) 17: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oiceye.com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당일에 한해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 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산청옥산 국민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2021000260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 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우선공	공급						
											Ĺ	공주택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	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곱 뻃	일반 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Й	사업 지구 철거민	만65 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 애 인	파독 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비 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 등	영구 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9A	4	-	48	6	2	-	2	1	1	1	1	1	3	1	2	6	3	2	14	2
29B	-	8	-	-	-	-	-	-	-	-	-	-	-	-	-	-	-	-	-	-
46	1	-	39	4	1	2	2	-	-	-	-	1	-	1	8	4	-	-	16	-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방법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1인 70%초과 90%이하, 2인 60%초과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94,142원 이하	2,692,468원 이하
2,737,521원 이하	3,650,028원 이하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mark>3,547,103</mark> 원 이하	4,965,944원 이하
3,696,82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mark>3,889,012</mark> 원 이하	5,444,616원 이하
4,081,200원 이하	5,713,679원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2,094,142원 이하 2,737,521원 이하 3,120,260원 이하 3,547,103원 이하 3,547,103원 이하 3,696,824원 이하 3,889,012원 이하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거주하는 자
- ②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하동군, 의령군에 거주하는 자
-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시	4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1인 70%, 2인 60%)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1인 70%, 2인 60%)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m'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약자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불가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7.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정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시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⑥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⑥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적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⑩ 「캠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⑩ 「캠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⑩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가려도 보신 규칙하는 재의동포로서 사 -도자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⑩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가려도 보신 귀하하는 재의동포로서 사 -도자사가 시작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명구가려도 보신 귀하하는 재의동포로서 사 -도자사가 시작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명구가려도 보신 귀하하는 자의동포로서 사 -도자사가 시작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전목적임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로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⑩ '점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로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 '대로프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등호에 따른 등록포로 ⑩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목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 60%) 이하인 경우: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산청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2세 이하: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3.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단,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제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합산 (1인 70%, 2인 60%)	W저도 도이하 경O 중처O크 경제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1인 70%, 2인 60%)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2인 60%)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인 경우 일반공급으로의 전환없이 탈락처리 되므로, 우선공급 자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산청군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계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함) 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산청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 제3호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mi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차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4.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mark>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mark>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LH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LH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LH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LH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인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인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산청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산청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청약순위확인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또는 온라인(<u>www.applyhome.co.kr</u>) 통해 발급가능 ※ (주의) 청약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및 배점관련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자격 또는 배점사항 불인정)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J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소속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시업장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0	t)자인 2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불가한 경우 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	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우선공급대상자	③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⑥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⑥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전부)	주민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⑦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⑧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⑲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②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대상자	②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m'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ㆍ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 표초본	주민센터	
동일순위경쟁시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 하여결정시항통지서를수령해야함)	주민센터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 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③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지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ㆍ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는 '21.04.28(수)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05.06~07]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으며, 현장제출은 '21.05.06에만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u>서류제출기간 마감일</u> (<u>'21.05.07</u>)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봉투겉면에 "산청옥산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발송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현장제출 장소 : 서류제출자 대상 추후 안내 예정
- ◆ 현장제출 장소와 등기제출 장소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장 신청자: 접수 신청 시(`21.04.19) 해당 서류를 현장에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2021.07.22(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항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 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2021.08.04(수) 10:00 ~ 08.06(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 ※ <u>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u>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현장 계약: 2021.08.05(목) 10:00~16:00 (점심 12:00~13:00)

• 당첨자는 이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	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임대대상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나	11월	
및 조건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할증	비율	
	또는 자산기준 초과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1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업주 시 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비랍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열면시항] ■ 본 RDIL LUT 입안되말 위한 주거생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본 RDI의 입자자고 선정된 상악난용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발서비스가 원판히 당정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소을 하여야 합니다. □ 본 RDI의 입자되는 선생님 형안성하는 일은 후 주민진동부사업이나 부대복리사설 등이 입원의 순영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한국을 하여야 한다고, □ 본 RDI의 입자되는 연생기업 형안에서 하여, 인크로 포 개설 개념 : 영점 등에 대해하는 지자를 본 경제 기간에 많은 "국업에 하여야 합니다. ● 생명소인 다. 교단 영구 '형벽 인기본역이가 하는 인크로 개설 개념 : 영점 등에 대해하는 지자를 본 경제 기간에 많은 "국업에 하여야 한다고, ● 생명소인 다. 교단 영구 '형벽 인기본역이가 한당시기 배인다. ● 관계용소시에 지원이었을 받는지 보안하시기 배인다. ● 관계용소시에 보안하는 경험 보안하시기 배인다. ● 관계용소시에 보안하는 경험 보안하시기 배인다. ● 관계용소시에 보안하는 경험 보안하시기 배인다. ● 관계용소시에는 중 한자 내 사실물은 안하여 발생되다. 무지, 관리의 유언에 관한 양계 만안 일계에 비오는 입자자가 부모해야 하여 사실물에 대한 게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용소시에는 용지를 보면 경험에 발생되다. 무지, 관리의 유언에 관한 양계 보안 일차가 부모해야 하여 사실물에 대한 게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로 공자를 가장하는 원래에 관심하게 보안하는 전체에는 관련보다를 보통하는 비용소시에 관계을 가장하는 비용소시에 관계 보안 존개를 보면 경험에 함께 관계 생물을 보면 가게 보면 관계 보안 경험에 보안 일차 기계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면 기계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면 기계에 보안하는 이 전에 대한 기계에 보안하는 보안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면 기계에 보안하는 보안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이 보안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이 보안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고 경험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면 기계에 보안하는 전체에 보안하는 것은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안하는 전체에 보안하는 수 있으면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안 함께 보안 보안 있는 지난 바일시에 보안하는 보안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안하는 보안 있다면 보안하는 보안 있다면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안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안 보다를 보고 있다면 보다를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우탑건설㈜ (취해담종합건설 에스지건설㈜ 상명이엔씨㈜ (취민성테크 태흥통신	-	㈜펨코엔지니어링 대평엔지니어링㈜ ㈜바탕건축사사무소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 • 뇌병변장애인,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휠체어사용자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 •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에 자석감지기와 거실에 적외선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개소에 한함)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지체 • 뇌병변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الملات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거실	0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mark>장애의 정도가 심한</mark> 지체 •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13 조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Oiceye.com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 · 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 ·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기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 2) 건성단등, 진제포함등 등 단성 건설완들 가진 것으도 전단받는 사람 등 전여 건기등이 단성 건설완 성가적도(Child-Pugh Score) 성가성 b등급이단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아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TILL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 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총 자산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707111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707117-177
		금융자산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산정 시 자산금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합기	웨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자동	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Δ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9



산청옥산 영구임대주택 일주자 문질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주택에 청약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1.04.0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20호), 국민임대주택(100호)와 행복주택(30호)이 함께 건설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산청군 거주지관할 읍·면사무소)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2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mi) 모집호수					_					
형별	세대수	전용	주거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게	우선	일반		-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m²)		25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71	공급	공급				
24	20	24.75	11.8973	3.9616	-	40.6089	20	5	15	102	벽식/개별난방	'22.12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m)	임대조건(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신청		임대보증금				전환가능 보증금		
구분		계	계약금 (<mark>계약시</mark>)	잔금 (<mark>입주시</mark>)	월임대료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가」군		2.170.000	70,000 42,4,000	1 720 000	42.160	(+)2,000,000	4,170,000	33,160
711년	24	2,170,000	434,000	1,736,000	43,160	(-)1,000,000	1,170,000	45,240
ᄔᆟ군	24		2,142,000	0.00	86,470	(+)10,000,000	20,710,000	36,470
니고		10,710,000	2, 142,000	8,568,000	00,470	(-)8,000,000	2,710,000	103,130

- 「가군」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09) 현재 산청군에 거주하는 자 중,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120%, 2인 110%):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소득	1인가구	(2,094,142)원이하	(2,692,468)원이하	(3,589,957)원이하				
- 1	2인가구	(2,737,521)원이하	(3,650,028)원이하	(5,018,789)원이하				
	3인가구	(3,120,260)원이하	(4,368,364)원이하	(6,240,520)원이하				
	4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94,205)원이하				
	5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94,205)원이하				
	6인가구	(3,696,824)원이하	(5,175,553)원이하	(7,393,647)원이하				
	7인가구	(3,889,012)원이하	(5,444,616)원이하	(7,778,023)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 . — ·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자산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 자동차 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소득·사산·산성망법(공공수택 법수사 모유사산 관련 업무저리기준)			
7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사·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압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총자산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우선공급						
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형별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24m²	5	2	1	2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내용
우선공급	-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별표3 제2호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별표3 제2호 나목)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여야 함)인 수급자 - (별표3 제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u>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u>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u>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u>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u>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u> 으로서 ②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u>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자 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2) 산청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2인 1주택 기준 신청, 중복신청시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ㆍ입주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총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접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총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총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총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자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년 미만	22	
	1~5년 미만	24	▶ 모집공고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으로,
1. 산청군 거주기간 (30점)	5~10년 미만	26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산청군 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 2,	10~15년 미만	28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이상	30	



구분		배점	IIII 전기 조 / FII LLTI \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40세 미만	19	
2. 신청자 연령	40~50세 미만	21	
(25점)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1~2인	24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인	26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0점)	4인	28	▼ 구구픽세네구성전의 담귀와 중달
	5인 이상	30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및 귀환국군포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3급일정 및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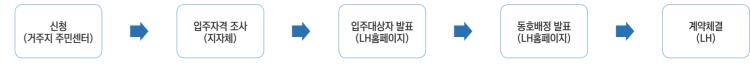
■ 공급일정 * <u>현장 접수만 가능</u>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21.04.19(월)~26(월)	산청군 내	'01.0700/□\	전자계약	'21.08.04(수) 10:00 ~ 08.06(금) 17:00
10:00~16:00 (점심 12:00~13:00)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21.07.22(목) 17:00 이후	현장계약	'21.08.05(목) 10:00~16:00 (점심 12:00~13:00)

-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은 온라인 및 현장 모두 가능하며 현장계약은 지정된 날짜에만 가능합니다.
- * 현장계약 장소 : 당첨자 개별안내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u>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ПUI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u>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u>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4.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인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 · 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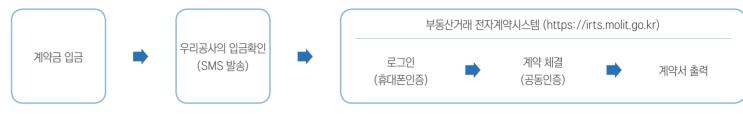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1.07.22(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

- 온라인 계약: '21.08.04(수) 10:00 ~ 08.06(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약체결 절차 】



- \times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 '21.08.05(목) 10:00~16:00 (점심 12:00~13:00)
- 현장 계약장소 : 당첨자 개별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금(현장납부시)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청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1 년			
신청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일반사항]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권을 확인하시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 - 확인하시야 합니다. 산성임수(1) 10. 국민 영구, 열북 안대주학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순인서 5)는 "나 원분지역본부 주택시업 1부 또는 신청옥산건실관리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말되지 제반대건을 문의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임수(1) 10. 독대 전기 전기 전기 기관에는 보고 전기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압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설물에 대한 계획은 반경될 수 있습니다. *** 자장임(임주자사전방면 등의 자정임) 2에는 안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환경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지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안하여 발생되는 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압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설물에 대한 계획은 반경될 수 있습니다. ************************************		



	on the state of th
구분	유의사항
구분 지구 및 단지여건	
	생용무위(엘리베이터 올,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자이가 있습니다.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비상탈출구 경량벽체에는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엄금함)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설치형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할고니에는 일도당시을 위한 정도 열시성 환기구기 열시되며, 이도 한에 거울을 기존이 합성하지 구도당을 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합구시의 한다가 열요합니다. 할고니 내부에 실외기실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16형은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실이 있음)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급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됩니다.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도 시중합니다.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전기,통신 단자함은 신발장 맞은편 벽체에 설치되며, 급수 계량기함은 복도 PD에 설치됩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우탑건설㈜ ㈜해담종합건설 에스지건설㈜ 상명이엔씨㈜ ㈜민성테크 태흥통신	-	㈜펨코엔지니어링 대평엔지니어링㈜ ㈜바탕건축사사무소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②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③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구분	하모	↓드 미 꿰사 하모 서며	자근 추천
	亡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_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0	시내내비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치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 선박: 기선 • 범선 •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부채		TUAL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והודסר
		세신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기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산청옥산 국민·영구임대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 · 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 ·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voiceye.com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산청군청 및 산청군 관내 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팜플렛 배부처	산청군 관내 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LH 청약센터-공고문에 별도첨부

Δ LH 임 •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9



